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0046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109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밑에서 2행 "단체'로"를 "단체'에"로 고치고, 4면 15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의 제2의 다. (2)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4면 밑에서 2행의 "규정 형식과 입법취지 등"을 "규정 형식과 입법취지, 제정 및 개정 연혁 등"으로 고치고, 8면 「별지 2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2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각 추가하며, 5면 1행 "결국....."부터 5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5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의 제2의 다. (2) ③항을 고쳐 쓰는 부분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만으로 한정한 것이라면 각 목의 법률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회복지상담, 무료숙박,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법문에 넣을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어법상 자연스러운 점, ④ 1970. 1. 1.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각 호로 제1 내지 4호를 두고, 제1 내지 3호에서는 '각 법률에 의한 각종 보호·복지·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노인휴양·인보무료숙박(隣保無料宿泊)·나완치자사회복귀사업(癩完治者社會復歸事業)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열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 1983. 5. 21. 법률 제3656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1 내지 3호를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는 본문과 다음의 법률로 각 호에 각 법률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 제4호를 제1항의 각 호에서 삭제하고 본문에서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다음에 그 내용을 위치시키면서 열거한 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형식을 변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수정·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각 호의 법률과 열거한 복지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 온 점, ⑤ 위와 같은 개정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이 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각 목의 법률을 새로 추가하여 그에 따른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그 복지사업의 종류를 열거함으로써 입법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5면 1행 “결국.....” 부터 5면 6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②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1. 부과처분 내역

1. 2011년 8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74,060원(가산세 포함)

2. 2011년 9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10,660원(가산세 포함)

3. 2011년 10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6,650원(가산세 포함)

4. 2011년 11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9,290원(가산세 포함)

5. 2011년 12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2,250원(가산세 포함)

6. 2013년 1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6,110원(가산세 포함)

7. 2013년 2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1,050원(가산세 포함)

8. 2013년 3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9,540원(가산세 포함)

9. 2013년 4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9,120원(가산세 포함)

10. 2013년 5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0,930원(가산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2. 관계 법령 추가 부분

【사회복지사업법】 (1970.1. 1.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어 1983. 5. 21. 법률 제3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아동복리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각종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노인휴양·인보무료숙박(隣保無料宿泊)·나완치자사회복귀사업(癩完治者社會復歸事業)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1983. 5. 21. 법률 제3656호로 개정되어 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인보복지·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모자복지·의료보호·사회복지관운영·완라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심신장애자복지법
5. 윤락행위등방지법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각호 생략) .끝.